

제2장 피의자·피고인 신원공개



제2장 피의자·피고인 신원공개

사례 5

의결번호	제2015-4호
매 체 명	인터넷 시사주간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1월 3일자 사회면
기사제목	○○○○클리닉 성형외과 김○○ 원장, '과실치사 혐의' 입건

1. 보도내용

「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북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서울시 강남구 ○○동 ○○-○번지 ○○○○○○빌딩 3, 5층에 소재한 ○○○○클리닉 성형외과 (<http://www.○○○○○.net/○○○○○> 의원) 원장 김○○(51)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(혐의자, 용의자 포함. 이하 같다)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였으며 병원의 상호, 명칭, 홈페이지 등을 상세히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.

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사례 6

의결번호	제2015-224호
매 체 명	경찰투데이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7월 8일자 경찰뉴스면
기사제목	편의점 강취 특수강도범 검거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부산 영도경찰서 ○○파출소는 8일 새벽 3시10분경 부산 영도구 ○○동 ○○○○ 편의점에서 홍모 군(18세/남)등 2명 중 1명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2명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등 101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홍모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.(중략)

도주하던 홍○○이 8층 건물 ○○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경위 김○○과 순경 심○○이 현장에서 목격했다.(중략)

피혐의자 홍○○에게 ‘빨리 내려오라 별 일도 아닌데 빨리 내려와’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(중략) 피혐의자 홍○○은 8층에서 계속 바라만 보았고 경위 김○○이 피혐의자에게 지속적으로 ‘큰 일 아니니 빨리 내려와라’ 설득하였고, 형사 당직차량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혐의자 홍○○에게 경위 김○○이 미란다 원칙 등 고지하고 검거하게 됐다.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(혐의자, 용의자 포함. 이하 같다)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. 언론이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